

##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

<'22.12.30.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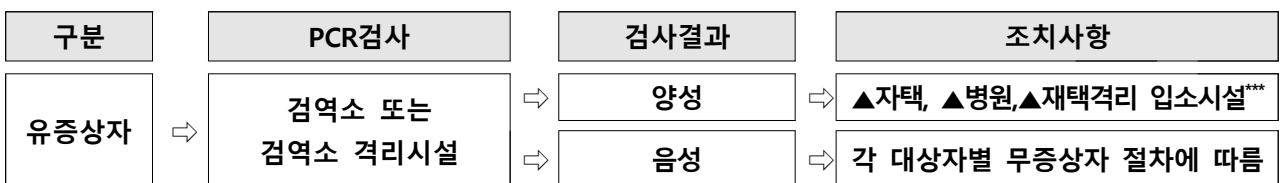
※ 본 지침은 국외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검역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음.  
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「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」에 따름

### ※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

- ◆ 중국 발 입국자 대상 Q-CODE 이용 의무('23.1.2. 0시~ (도착시각 기준))
  - 항공기 탑승 전 Q-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
- ◆ 중국 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('23.1.5. 0시~)
  -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(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)
  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[질병관리청 누리집] - [알림·자료] - [공지사항] - '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' 참조
- ◆ 중국 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('23.1.2. 0시~)
  - 입국 후 1일 이내(도착 익일 이내) PCR검사 완료 후 Q-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
  - \* Q-CODE 누리집(cov19ent.kdca.go.kr) 접속 → '입국 후 검사 등록'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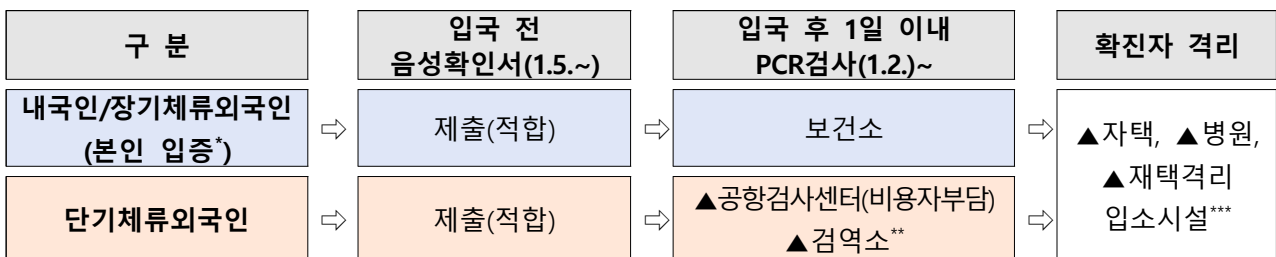
### ※ 공항 검역대응 흐름도

#### □ 유증상자



#### □ 무증상자

##### ○ 중국 출발 입국자



\* (본인 입증)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

\*\* (검역소)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 검사

\*\*\* (재택격리 입소시설) 무증상·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

○ 일반 국가(중국 외 국가) 출발 입국자



가. 검역조사

- (대상) 중국 출발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
- (기본사항) 개인별 체온측정(발열감시카메라, 고막체온계 등),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
  - (안내사항) ‘중국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’ 배부(붙임 1)
    - \*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
  - (입국 후 검사) 체류자격에 따라 입국 후 PCR검사 실시\*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누리집에 등록
    - \* (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)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(단기체류 외국인)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

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·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

## 나. '음성확인서' 확인

- (대상) 모든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

### ◆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

- ①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
- ②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(장례식 참석)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\* 소지자
- ③ 항공기 승무원(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)
- ④ 확진일\*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내국인

\* 붙임2(검사 면제 확인서) 양식 참고

\*\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

- (검역소) 입국시 'PCR(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))음성확인서' 수령 및 확인  
- (인정기준)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

구 분	적합 기준
① 검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*에 기초한 검사일 것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</li> <li>●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, AG, Antigen)도 인정함</li> </ul> <p>※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</p>
② 검사 및 발급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PCR음성 확인서 :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 * (예시) '22.1.22. 10:00시 출발 시 '22.1.20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</li> <li>● 전문가용 항원검사 :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(1일) 이내 검사 * (예시) '22.5.23. 10:00시 출발 시, 5.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</li> </ul>
③ 필수 기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</li> <li>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</li> <li>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</li> </ul>
④ 검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검사 결과가 '음성'일 것</li> <li>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'미결정', '양성' 등은 인정하지 않음</li> </ul>
⑤ 발급언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'검사방법' 항목은 '한글 또는 영문'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</li> <li>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</li> </ul>

- (영유아 입국)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함
- ('음성확인서' 미제출자 조치) '음성확인서' 미제출자\* 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되며, 필요시 관계법령\*\*에 따른 조치 가능
  - \*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
  - \*\* 「검역법」 제12조, 제24조,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1조
-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\*)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(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)
  - \* (장기체류외국인)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 신분증, 주한미군 신분증 등(본인 입증 책임)
- (단기체류외국인\*) 입국 후 부적합 등(미소지 포함) 확인 시,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[서식 2] 작성하여 신병 인계
  - \*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 신분증, 주한미군 신분증 미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치
- (현황보고) '음성확인서'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
- (사후관리) '음성확인서' 위·변조 의심될 시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별도 통보

## 다. 기타사항

- (검역소) 부득이한 Q-CODE 미이용 입국자일 경우, 건강상태질문서, PCR음성확인서 등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검역관은 **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-‘서류심사’ 화면**에 입국자 정보 수기 입력
  - \* Q-CODE 이용자는 검역 완료시, 지자체로 정보 자동 연계
-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
- (지자체) 지자체는 **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**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 확인 가능
  - \* (지자체 확인방법) **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** → 해외입국자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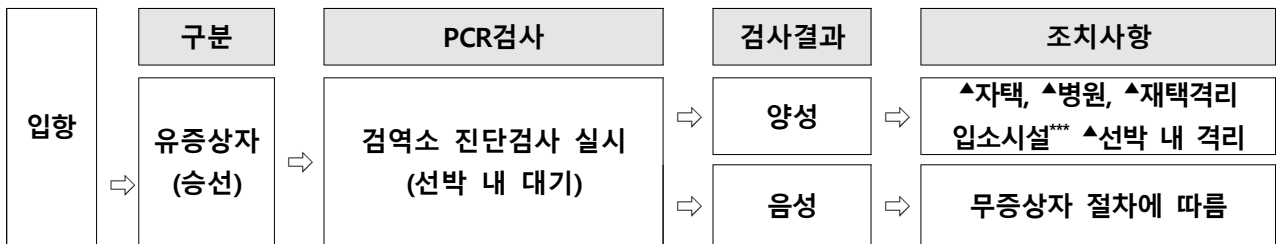
## ※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

### ◆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(23. 1. 2. 0시~)

※ 추후 신증변이 발생 또는 국내·외 방역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

## ※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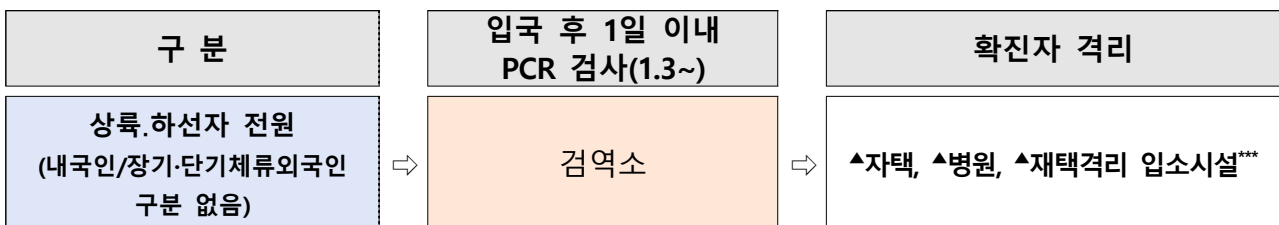
### □ 유증상자



※ 유증상자 검사결과 ‘음성’ 확인 후 입국절차(하선자) 진행

### □ 무증상자

#### ○ 중국 출항 상륙하선자



\* (본인 입증)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

\*\* (검역소)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 검사

\*\*\* (재택격리 입소시설) 무증상·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

#### ○ 일반 국가(중국 외 국가) 출항 상륙하선자



## 가. 검역 조사

- (대상) 중국 출항 선박의 상륙자·하선자(내국인 포함)
- (승선검역)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전 선원 및 승객\*의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사 실시
  - \* 승객: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감독관, 선원의 가족, 선박의 작업 등의 사유로 승선하는 관광객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, 이 경우 선원과 동일하게 조치
  - ※ 검역관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,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

### ◆ 승선검역 대상[서식 7]

-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
- ② 입항일 기준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
- ③ 선박위생관리(면제)증명서(유효기간 만료 포함) 미소지 선박
-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

- (비승선 검역) 승선검역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, 서류심사 또는 「검역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
  -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시 ‘불합격’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

## 나. 하선절차

- (기본원칙) 모든 상륙자·하선자 대상 검역정보 확인
  - (검역정보 확인) 모든 하선자에 대해 국내 연락처, 주소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확인
  - \*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

- (검역조사)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
- (무증상자 검역조치) 하선자\* 전원 1일차 PCR 검사 실시
  - \*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되며, 다만, 보안구역 내 작업자는 제외
  - \*\*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로 대체
- (일일상황 보고)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





# 중국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안내문

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 
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됩니다.

## 입국 후 PCR검사 및 검사 결과 등록

- 대한민국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 받기(의무사항)**
  - 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(항공권, 여권 등)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등)을 반드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
  -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방문하여 검사(비용 본인부담)
- PCR검사 결과 큐코드 홈페이지(<https://cov19ent.kdca.go.kr>) 접속하여 등록하기**
  - ① 큐코드 홈페이지 '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' 클릭 → ② 여권번호, 생년월일, 입국일 입력하고 '조회' 클릭 → ③ 검사 일자, 검사 결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기관 발송 문자 업로드

## 한국 도착 후 주의 사항

-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고 자택 또는 숙소 대기**
- 코로나-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 방문**

입국 후 PCR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,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